
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

(오신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8. 19.

발의자 : 오신환 · 이종구 · 강석호

박맹우 · 이명수 · 송희경

김현아 · 김정재 · 박용진

김규환 · 홍일표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 이러한 목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‘복지’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 이 법의 적용대상인 예술인들 중에는 시혜성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정부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음.

또한 이 법의 적용대상인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하여야 하는데, ‘증명’이라는 것이 예술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.

이에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, 재단사업 중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은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예술 활동 증명 대신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함(안 제2조).
- 나. 재단의 사업 중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하므로 삭제하고, ‘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’을 ‘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’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함(안 제10조제1항).
- 다. 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임원선임 규정 을 수정함(안 제12조제2항).
- 라. 예술인 복지 지원대상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공 요청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의2 신설).
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

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활동을 증명”을 “활동사실을 등록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개인 창작예술인”을 “예술인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이사장, 상임이사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, 이 사장, 상임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.

제4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 지원대상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「사

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
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예술인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
에 따라 예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
술인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②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,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,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.

③ ~ ⑤ (생략)

<신설>

② 이사장, 상임이사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, 이사장, 상임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5조의2(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 지원 대상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

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
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
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